

보 고 사 항

□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
4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5. 2001년도 군정 주요 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
6.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
(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)
7. 기타 일반안건

□ 제9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— 2001. 1. 19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1-1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1. 1. 30 (火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90회 정례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-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
 - 고 시 일 자 : 2000. 12. 26
 - 고 시 번 호 : 화순군의회 규칙 제 11 호

○ 2000년도 제4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- 고 시 일 자 : 2000. 12. 26

- 고 시 번 호 : 화순군고시 제2000 - 44호

○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2001. 1. 12
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 조례 제 1669 호

○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2001. 1. 12
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 조례 제 1671 호

○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2001. 1. 12
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 조례 제 1670 호

○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2001. 1. 12
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 조례 제 1672 호

○ 보건소 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○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

— 2000. 12. 26 집행부 이송

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○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. 18
- 발 의 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- 회 기 : 2001. 1. 30. ~ 2. 6 (8일간)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. 18
- 발 의 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- 출석요구내용 : 별 천

○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 결의안

- 발의일자 : 2001. 1. 18
- 발 의 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- 주 문
-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일 시	보 고 대 상	보 고 자
2001. 1. 30 (火) 10:00	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	실·과·소장
2001. 1. 31 (水) 10:00	종합민원처리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	"
2001. 2. 1 (木) 10:00	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	"
2001. 2. 2 (金) 10:00	건설과, 도시경제과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	"

- 제안이유

-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2001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함.

○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0. 1. 20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-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300,000원에서 500,000원으로 상향 조정
- 농지세를 농업 소득세로 개편하고 농지임대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
-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 세율인상
 -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3년째부터 5%씩 감면하여 50%까지 감면
 -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세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 인상 (교통세액의 32/1,000 → 115/1,000)
-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 조정
 - 켈런 1갑당 460원 → 510원 인상

- 2001. 1. 1.부터 승용자동차로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승용 자동차에 근접하도록 조정

※ 2001. 1. 20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0. 1. 20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화순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. 12. 31로 종료됨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사전에 재정비하고자 함

-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
- 사회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
-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
-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
-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 정비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정비
- 기타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정비

※ 2001. 1. 20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0. 1. 20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·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·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, 기금운용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함.

· 기금의 용도 명시

· 기금계좌 설치는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

·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

·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

· 용자사업은 금융기관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,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

※ 2001. 1. 20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00. 1. 20

- 제출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· 화순군 노인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노인복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더욱더 내실있게 기금을 운용하고

· 노인복지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서 기금집행 투명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-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장 및 노인복지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
-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
-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

※ 2001. 1. 20 총무위원회 심사회부